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 감축활동의 승용차 부제 경감률에 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을 조문상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,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이 10일로 짧으며,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, 대상사업의 범위의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등(안 제23조, 제24조)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에도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,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

나.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 정비(안 제13조의6)

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

다.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 문구 명확화(안 별표 1)

비고 제5호아목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지구 내 물류시설을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로 개념을 정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6제3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1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44조”를 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69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5호가목1) 중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아목 중 “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시설”을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6(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·② (생 략)	제13조의6(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한다</u> . 다만, 보궐위원 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<u>하며, 한 차례만 연</u> <u>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<u>공무원이</u> <u>아닌 위원</u> 중에서 각각 호선(互 選)한다.	⑤ -----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 -----.
⑥ ~ ⑫ (생 략)	⑥ ~ ⑫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 의 부과) ① (생 략)	제23조(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 의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 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 은 날부터 <u>10일</u> 이내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 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부담금의 경감) ①・② (생략)	제24조(부담금의 경감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34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5조,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7조,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44조,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,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69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12